

## 아이디어도 재산이다

– 의장 편 –

이상호

(L & K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산업재산권은 특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4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가을호에 살펴본 특허와 실용신안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기술적 창작이라면 의장은 이와같은 제품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디자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의장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의장(意匠)”을 뜻풀이하여 보면 마음(心)의 소리(音)를 상자(□)에 도끼(斤)로 새기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심미성, 형태성, 시각성, 물품성을 의장의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의장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품이 존재하여야 하고, 물품의 형태와 시각적인 심미감이 혼연일체가 되어 비로소 하나의 의장이 완성되게 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속담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고대로부터 끊임없이 “미(美)”를 추구

해 왔다.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듯이 물품에 대한 선호도와 기호가 다르므로 생산업자들은 동일한 제품이라도 여러 가지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술의 축적을 통하여 새로운 생산활동을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부분이 기술과 신뢰도였으므로 생산자들도 상품의 기술적인 특성을 살리는데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와 디자인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최근의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가장 고려하는 것이 제조업체(44.7%), 디자인(29.1%), 가격(26.3%)의 순으로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디자인이 상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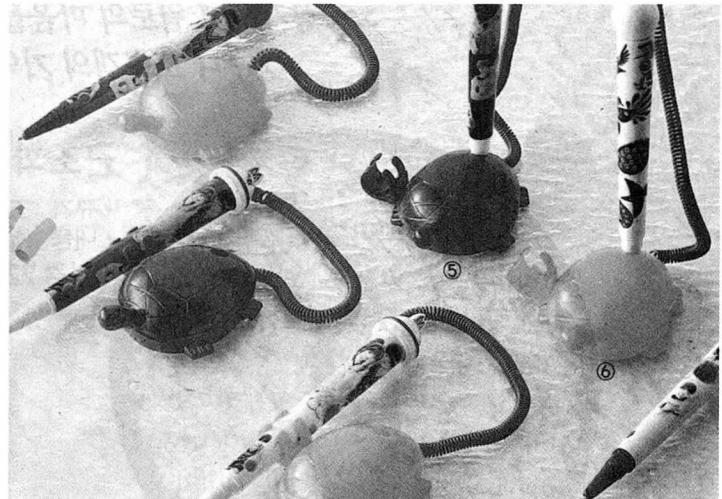
의 기업이나 제조업체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있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대한 창작이므로 누구나 이를 한 번 보기만 해도 모방하기가 쉬우므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만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제품을 새로 개발하였을 경우는 물론 기존의 제품이라도 이를 새롭게 디자인 하였다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기가 개발한 의장을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는 그와 유사한 여러개의 의장을 유사의장으로 등록받을 수도 있다. 의장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 먼저 특허청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는데 의장법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으

므로 이에 맞도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이 출원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의장이 의장으로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장의 대상인 물품이 있어야 하고 그 물품은 형상, 모양, 색체를 갖추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심미감을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의장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전부 의장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지 않아야 하고(신규성), 주지의 형상, 모양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어서는 아니되며(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등록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출원전 공지자 함은 견본품을 만들어 공개시키거나 팜플렛이나 카탈로그를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에게 공개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타인의 공지는 물론 자기 자신에 의한 공지도 포함되므로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이와같은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제품을 먼저 출하하여 소비자의 반응을 살핀 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같은 경우 자기 공지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이 이를



먼저 출원하였을 경우에도 등록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창작성이라 함은 자연물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였거나 누구나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의장 또는 기존의 제품을 약간 변형시킨 정도의 의장을 말하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은 등록 받을 수 없다.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인 방법으로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의장을 말하며 수공업이라도 동일한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공업상 이용가능한 의장으로 본다. 동일한 물품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견 하여 동일하게 보이는 정도를 말한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았더라도 그 형상이나 모양에 대한 의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타인이 그 제품에 대하여 의장등록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형상, 모양은 상품화 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의장권자도 특허권자의 승인을 얻어야만 그와 같은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시는 제품에 대한 의장등록출원 여부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장은 제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의 모방이 용이하고 제품의 Life cycle이 짧은 데도 불구하고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므로(약 1년 정도 소요)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생각과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의장에 대한 출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타인이 자신의 제품과 동일·유사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의장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 경우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손해 배상청구소송,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신용회복조치 등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되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도 미리 의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T.I사는 사업경영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금보다 특허권에 대한 보상금이 더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1996년 7월 1일 개정된 의장법에는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조기공개제도가 신설되어 출원후부터 심사전까지는 사전공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출원과 동시에 공개

신청을 한다면 특허청은 이를 의장공개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게 되고 타인이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면 우선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막대한 인적, 물적재원을 투자하여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발하여도 값싼 모방품이 범람하고 특히 및 의장에 대한 소송 등으로 산업체산권 자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품이나 디자인에 대한 개발을 계획한다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으므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권리 확보하는 길만이 유일한 돌파구라 할 것이다. 산업체산권

은 무체재산권이나 엄연히 사유재산이므로 국가가 이를 원천적으로 보호해 주지는 못하지만, 산업체산권에 민·형사상의 제재 조항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고안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품질을 개선하고 디자인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승부를 겨루어 나가는 것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 할 것이다. ⑥

\*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02-568-98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위험진단 안내

### 화재·폭발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0여 년간 인명피해,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진단업무를 전문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방재시험연구소, 최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험관리정보센터, 관련 분야의 기술사, 기사 등 각종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재위험진단은 특수 위험 요인까지 정밀 진단하여 합리적인 방재대책을 제시합니다.

\* 자세한 문의전화 : 본부 기술관리부  
(02)780- 8111(교)381, 382

#### 화재위험진단 업무처리 절차

진단범위 상호협의→계약체결→진단팀 구성→현장진단→진단결과 Report→진단결과 Report 제출

#### 위험진단 항목

종합방재계획 수립, 방재시설의 설계도면 검토, 인화성액체, 가연성가스, 독성물질에 대한 정량적 위험평가, 화재원인별 위험, 공정위험, 폭발위험, 위험물 및 가연성 가스시설, 소방시설, 연소확대 방지시설, 방화관리, 보험설계